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7.26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며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07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고양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부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민19세 이상민저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09.07) 이전부터 계속거주하여 일반 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7.03.0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고양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부 중인 무주택 공민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자격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권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자는 가점제/우점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우점제로 전환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등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공급에 담당하며, 동 호수 배정 우점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축현장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나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원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자 포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 해당청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청 주택행렬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완공공동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해당청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상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공동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 해당청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광명시·부산 기장군 - 모든주택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경기도 2호)한·세종시·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민간택지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73조(다동형청 제2780호, 2017. 02. 13. 일부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통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 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권 관리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07.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 0000호(2017.09.07)(현재 협의중이며 2017.09.14로 변경 될 시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B2 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102세대 및 부대비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2세대 포함)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공급				계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72.937A	72A	214	72.937	22.859	95.796	51.585	147.381	52.98	특별공급				66	148	8
											20	20	20	6			
주택		72.936B	72B	214	72.936	22.567	95.503	51.585	147.088	52.98	특별공급				66	148	8
											20	20	20	6			
		84.982A	84A	337	84.982	25.559	110.541	60.103	170.644	61.73	특별공급				112	225	14
											34	34	34	10			
		84.968B	84B	337	84.968	25.721	110.689	60.093	170.782	61.72	특별공급				112	225	14
											34	34	34	10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 급 금 액		계 약 금		중도금(60%)						잔 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72A	214	102동 1.4층 106동 1.4층 107동 1.4층 110동 1.4층	1층	8	184,175,327	228,424,673	412,60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03,150,000
			2층	8	184,175,327	235,924,673	420,100,000	21,005,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05,025,000
			3~4층	16	184,175,327	243,424,673	427,600,000	21,38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106,900,000
			5~8층	32	184,175,327	250,924,673	435,100,000	21,755,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108,775,000
			9층 이상	150	184,175,327	258,424,673	442,600,000	22,13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110,650,000
72B	214	102동 2.3층 106동 2.3층 107동 2.3층 110동 2.3층	1층	8	184,175,327	228,424,673	412,60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03,150,000	
			2층	8	184,175,327	235,924,673	420,100,000	21,005,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05,025,000	
			3~4층	16	184,175,327	243,424,673	427,600,000	21,38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42,760,000	106,900,000	
			5~8층	32	184,175,327	250,924,673	435,100,000	21,755,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108,775,000	
			9층 이상	150	184,175,327	258,424,673	442,600,000	22,13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110,650,000	
84A	337	101동 1.4층 103동 1.4층 104동 1.4층 105동 1.4층 108동 1.4층 109동 1.4층 111동 1.4층	1층	14	214,593,110	232,506,890	447,100,000	22,355,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11,775,000	
			2층	14	214,593,110	241,506,890	456,100,000	22,805,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14,025,000	
			3~4층	28	214,593,110	250,506,890	465,100,000	23,255,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116,275,000	
			5~8층	56	214,593,110	259,506,890	474,100,000	23,705,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118,525,000	
			9층 이상	225	214,593,110	268,506,890	483,100,000	24,155,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120,775,000	
84B	337	101동 2.3층 103동 2.3층 105동 2.3층 108동 2.3층 109동 2.3층 111동 2.3층	1층	14	214,558,346	232,541,654	447,100,000	22,355,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11,775,000	
			2층	14	214,558,346	241,541,654	456,100,000	22,805,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14,025,000	
			3~4층	28	214,558,346	250,541,654	465,100,000	23,255,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116,275,000	
			5~8층	56	214,558,346	259,541,654	474,100,000	23,705,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47,410,000	118,525,000	
			9층 이상	225	214,558,346	268,541,654	483,100,000	24,155,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120,775,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고양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보존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며, 입주자 모집 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용품(천장형 싱크에이전, 발코니 화장,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 선택용품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확정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로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국경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액완료(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이고, 김리자가 불가한 경우 중도금 지급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후 지정한 중도금 대물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물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물 협약은행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물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물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물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라 함)에 의해, 분양계약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인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으로 포함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2A	72B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20	20	34	34	108
	경기도 거주자(50%)	10	10	17	17	5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0	10	17	17	54
	소 계	20	20	34	34	108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30%)	6	6	10	10	32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4	4	7	7	22
	수도권 거주자(50%)	10	10	17	17	54
	소 계	20	20	34	34	108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30%)	2	2	3	3	1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1	1	2	2	6
	수도권 거주자(50%)	3	3	5	5	16
	소 계	6	6	10	10	32
	합	66	66	112	112	35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전 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내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제외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 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3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 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추천기관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정기복무 군인 : 국방부(복지정책과) ③ 정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복지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중소기업청 ⑤ 이주대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⑥ 대한민국체육공공자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⑦ 북한 이탈 주민 : 하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합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자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부양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주택건설 지역(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외인 적용되며 과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내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고양시) 거주자가 우선함.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일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정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건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서에 비치)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신청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신청자 명단에 대한 전화의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신청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4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도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자 등 부처적용도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효 처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5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당정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토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적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토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당정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정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제한공공임대주택, 이천기관중사자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기본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안정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 수원시 → 고양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내 행정구역으로 전이한 경우 (예 : 고양시 → 인천광역시 → 고양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정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해당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정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정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정금액 이상인 자 	고양시 경기도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정금액과 상관이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해당된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고양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항-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7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또는 분리세대의 경우)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점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고령자 1년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지역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지역(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지역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 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액연체대상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이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별도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순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물주에게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chuk-fullvever.co.kr)에 공개함.

IV.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당첨자 발표	신청 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고양시/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17.09.12(화) 10:00 ~ 16:00	2017.09.13(수)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방문 접수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건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2번지 한림 풀에버 건본주택(원흥동 인근)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방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존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액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기본증명서	자녀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속의 소득증명서류) (표 소득증명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방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필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명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근로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재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회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명서류로 제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통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 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하여 근로소득만 산정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정책 문화정책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으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고양시/경기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17.09.14(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함) 또는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7.09.15(금)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수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88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장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입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확인요청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요청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차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를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남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용 비차)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신청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판」의 인자판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감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9.13(수) 14: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에 게시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외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9.21(목) 확인 :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 홈페이지(http://jichuk-fullever.co.kr)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9.21(목)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명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jichuk-fullever.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수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7.09.21(목) ~ 2017.10.01(일)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17.09.2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V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7.09.26(화) ~ 2017.09.28(목) 3일간, 10:00 ~ 16:00	고양 덕양구 원흥동 632번지 지옥역 한림 풀에버 견본주택 : 원흥역 인근

- ※ 순회형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할당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11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특별공급 포함)	○	본인 확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일반공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시서류 및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지적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도 당첨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관리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유대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절거예중정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급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인인증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신청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정수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이중당첨자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망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나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제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사실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계약금(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수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정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정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정제 접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접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당첨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 입주자지정기간 중 실입주일(또는 잔금 연체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리면적이 차주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주 상호 정산하며, 수수료 이하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주 정산함. · 입주 계획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택단지의 신청은 인하여 건축사실사 및 대지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소음·조망·일조·전선일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환경영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본 피대상건의 구조를 등 제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조건 고지사항에 대한 자격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단,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공동주택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232-0001-1835-00(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한림건설 주식회사

12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건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 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향후 지정되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상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금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사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까지 아니함.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고 입주(입주 잔금 정산 시) 전 납부된 이자를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일 납부하여야 함. 또한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 통보하는 은행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승인 대출(잔금정산)시까지 해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예정일 : 2020.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선납금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 개시일 이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현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체지연,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Ⅶ.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 금(70%)	
		계약시	계좌입	2018. 03. 05.	입주 지정일		
72 A	12,098,000	1,209,800	2,419,600	2,419,600	8,468,600		
72 B	11,636,000	1,163,600	2,327,200	2,327,200	8,145,200		
84 A	12,646,000	1,264,600	2,529,200	2,529,200	8,852,200		
84 B	12,756,000	1,275,600	2,551,200	2,551,200	8,929,200		

■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232-0001-1837-00(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한림건설 주식회사

- 발코니확장대금은 상거래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유의 사항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있으며, 별도계약을 하여야 하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 개정 시행)
- 건본주택은 상기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 및 시공되었으며, 별도품목 내역은 건본주택 및 안내문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으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한 이유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플러그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장호는 내용합,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장호규격 및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장호는 단장으로 설치되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준 과부공간으로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별도비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창호 설치 후 입주후서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단, 사용시후 설치 가능)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당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입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기원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열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13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유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입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형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종품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종품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추가 선택 품목) (※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설치위치	설치 대수	설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 금(70%)	
				계약시	계좌입	2018. 03. 05.	입주 지정일		
72 A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100,000	410,000	820,000	820,000	2,87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400,000	540,000	1,080,000	1,080,000	3,780,000		
72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100,000	410,000	820,000	820,000	2,87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400,000	540,000	1,080,000	1,080,000	3,780,000		
84 A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84 B	거실+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620,000	2,170,000		
	거실+안방+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840,000	2,94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1,100,000	3,850,0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에어컨 설치 대금	232-0001-1839-01(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한림건설 주식회사

- 에어컨 설치 대금은 상거래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유의 사항

- 상기 실별 환경형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함.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공사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 후 계약 시 안내받은 제품이 단종될 경우 동일,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형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신형세대는 기본제공(거실, 안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외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단위세대 유상 옵션(추가 선택 품목)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적용사항	위 치	금 액	세부 적용 내용	계약금(10%)		중도금(20%)		잔 금(70%)	
					계약시	계좌입	2018. 03. 05.	입주 지정일		
72A	안방 불박이창	안방	1,980,000	안방 불박이창 설치	198,000	396,000	396,000	1,386,000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72B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안방 불박이창	안방	2,310,000	안방 불박이창 설치	231,000	462,000	462,000	1,617,000		
84A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84B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양문형 냉창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창고	520,000	1,040,000	1,040,000	3,640,000		

■ 단위세대 유상 옵션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유상 옵션 설치 대금	232-0001-1833-09(대구은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한림건설 주식회사

- 단위세대 유상 옵션 설치 대금은 상거래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 타일, 갈래반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 바닥타일 및 재료블리대, 욕실 바닥난방+시멘트몰탈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라브
벽	협핑지 마감, 발코니 벽 도장,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천 정	천정지(초배지포함),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반자동릴(물딩포함),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일반)
욕 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행, 욕실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기구	주방기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일체(가스쿠포, 주방액정TV, 렌지후드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감사 관련 후드 및 주방 배기 덕트
일반기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반침장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립 등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등

· 마이너스옵션 금액 (※ 금액 변경 될 수 있음)

주택형(㎡)	72A	72B	84A	84A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2,215,092	22,147,146	25,567,936	25,602,169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생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임블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어진 통풍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깊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자정기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전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체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전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화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공사, 기타 공사사실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설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본 시설은 적합한 강리감속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체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하자발생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보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선택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Ⅷ. 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방수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이동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역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평면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 속 근로자의 소유로 사용하여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일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방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넓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1]**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주택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제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제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주택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경우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함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가 본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 다른 순위와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선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순위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오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입주자처음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금증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처에서 청약예치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정한 거주 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 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증과 일치하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접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할 청약처에서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순위 청약접수결과 및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일화와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할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순위 이상 청약 시는 청약 여부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방문하시어 현모시성 유무, 도로, 소음,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단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당사가 직접 견학하는 건 이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 확장 시공, 시스텝 에어컨,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영행위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제 입주자를 위해 견학하는 것 이외에 견학대상 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번조 등이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중 천재지변, 화재재난,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점령행 발생, 입주자의 집단민원 등 예외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체의 품질, 풀기 등으로 시공 중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사항 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건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함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견학자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이 포함된 VR 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견본 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단지 내외 도로(이하주차장 랩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통로시, 외부소재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될 수 있음(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주거공공부분인 공공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공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다, 벽체 마감은 당사 실시 설계 후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대리부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방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함.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부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부대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함.
- 평형 및 형태별 특성에 따라 정소용 수전,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기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부대부시설설치(근생 포항)의 실적이 및 D/A가 일부 세대 부근에 설치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분부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들의 외관은 관할 건축의 이허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거래비용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부시설 등 단내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산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벽체는 경락벽체 또는 단열벽체 설치 등으로 입주 후 구조별 및 시공리드 못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액터 못 등 건조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하차차장용 사용자(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공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건축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면, 입면(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서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며,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장소는 규격 및 사항, 열원(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센터(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현상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열재 외부 도로로 되어 사외 기계 당장은 행정관서의 위치 또는 단지 차폐벽의 거치 등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기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골도 주지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품질점검을 위해 샘플하우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층고를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도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을 준수하여 계획함에 따라 중간 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 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벽지, 바닥재, 타일 등)가 미 시공 됨.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임.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도록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조총학생은 지구 내 신설 조총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당시 교육지원청에 조총학교 학교설치 위치변경에 대한 협의중으로 학교용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신설 조총학교의 학교 설립 확정 여부 및 개교 시기는 학교 설립상의,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구의 조총학생은 기존 조총학교 및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 유보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당해 지구의 고등학교는 고당시 인근 학교에 배정될 예정임.
- 신설 예정 조총학교의 학교 설립 지연 또는 취소 시 입주세대 조총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으로부터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경사도)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역이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기 설치되되,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체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는 PD 등의 점검을 위하여 세대 내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책건실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평형벌로 전면 혹은 후면 발코니(다용도실, 피난공간)에 예리한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며, 그로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기준을 초과한 세대 대비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및 인문물(사비내 건물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에 표시된 대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각국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종 광고 및 홍보 유인물은 인쇄 과당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는 상기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형용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 조명기구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세대 간 조연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입면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목적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재산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적외 열에 면해 상층건인 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실내내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 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절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충돌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구조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 상 조립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

17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자에게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히 큰 관리비 등이 고가되거나 부과될 수 있으나 유리하지가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타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람.

IX. 단지 여건사항

■ 택지개발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사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당사 부지와 접해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등으로 분진, 먼지, 소음 및 공사차재 수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급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있음.
 -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공사계획 평면도, 건축용 등 관련 도면, 지구단위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시행행지 포함) 내용 및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확인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 계획(변경 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하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 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람, 이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분양을 위하여 제작되는 광고·홍보물리므로 공급내역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차)계획, 학생 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한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도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공개구지, 공공보행로, 공공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은 사업부지 이외의 지구단위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시 숙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교차,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지속출처에 대한 인데타이 계획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이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공계획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 지구, 환경의 정책에서 의한 것으로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고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본 공도에 반영되지 않은 고양 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 지구에 조성되는 고양종합철합(154kv 5문)은 철거 후 철거와 정비·예정으로 이로 인한 지구경계부에 전기공급시설(2곳, C/H)이 설치될 계획이며, 계약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 지구 동쪽에 위치한 군부대의 훈련(영내 사격장) 및 병영생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이 불가하고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역 공공주택 지구 남측 경계에 수도관 전철3호차 지속출처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구부 남서측 창릉천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고양상승지구, 운영용) 및 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광역자원순환센터 계획)이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음
 - 건축허가승인 조건 및 협의에 따라 당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예정임.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받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 다음과 설계와 관련된 내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평형,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일부 시점에 최초 사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데타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색상 또는 인허가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을 둘는 구조를 적용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을, 창틀 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부대부시설 등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등 부대부시설설치는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은 설치기 의무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부대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기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 시공함으로써 마감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시공가능,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심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공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지중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내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주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 통선은 단지 출입구 부분의 아파트 차량 통상과 공동으로 사용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 GX ROOM,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호인실, 도서관, 주민카페, 사우나,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 하우스, 캠핑장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시기이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정하여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다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외 각종 인증서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별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2. 신축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3.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4. 기타 인증서</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1.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2.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p> <p>1.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장수명 주택 인증서</p> <p>1. 인증번호 : KRH-L17-020 2. 신청서(사업주체) : 한일건설(주) 3. 건축물명(고양시직공공주택지구 B2블록 공동주택) 4. 대지위치 : 고양시직공공주택지구 B2블록 5. 인증등급</p>
---	---	--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 기가재	적용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아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 난방/급탕/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아재 또는 KS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침실/주방 : 각1개소 설치
일괄소동 스위치	적용	- 일괄소동 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금 액 (원, VAT포함)
건 축	㈜도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273,979,400
전 기	㈜한국이애프티엔지니어링	600,300,000
통 신·소 방	㈜한국나이스이엔지	253,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심의이후 정확히 기재/보완 예정)

- 「주택법 제38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공사비	토 목
	기간이자		건 축
	그밖의 비용		기계설비
간접비	설계비	그밖의 비용	그밖의 공종
	감리비		그밖의 공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합 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추후 보완 예정)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보증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주주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이다.
1. 주택주에게 부도파산·사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주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이다.
 - 다.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주에게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이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1. 전제조건, 전행, 내관 기타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주택주에게 분양계약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주에게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계약,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주 등)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이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총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물변제 받은 입주금 대물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인하여 주택주에게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가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이다.
 12. 주택주에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할 수 있지 못한 경우의 지체배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품목(예:시공으로, 발코니사,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주에게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지급금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주에게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주에게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주에게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18.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이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이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입사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 호
	주 소
	등록번호

■ 건본주택 위치



- 건본주택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동 원흥동 632 지족역 한림 풀레버 건본주택
- 건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jichuk-fullever.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타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건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02 - 591 - 1100